

November 29, 2024

2024년 11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

2024년 11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 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 환경부의 최근 정책 동향, 환경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10건)

공포(시행)일자	법령명 (고시 등)	주요 개정 내용	비 고
'24. 11. 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장관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을 한국환경공단에도 둘 수 있도록 하며, 오염총량목표수질 미달성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고, 해조류 등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수산물을 포획·채취하여 물 세척하는 시설도 모두 기타수질오염원에 포함시키며,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중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정수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수질
'24. 10. 25.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순환 촉진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절차를 정하고,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품질인증 기준, 인증기관의 지정·해제 기준, 품질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을 제정	수질
'24. 10. 22. (25. 10. 23.)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합리화하며,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평가 대상의 경우 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며, 환경	자연

		영향평가제도의 품질 및 신뢰도를 제고 및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	
'24. 10. 22. ('25. 4. 2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저공해자동차 등만 운행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대기
'24. 10. 22.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후위기적응 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국가전력 및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근거와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대기
'24. 10. 18.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에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기업은 제외	폐기물
'24. 11. 6.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결정하기 위해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 상온 대비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배터리 에너지밀도 등을 규정	대기
'24. 11. 6.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이륜자동차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에 포함되어, 전기 이륜자동차의 실적 산정방법을 반영하고, 승용·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실적 산정방법을 연차별로 강화하여 제1종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확대	대기
'24. 10. 17.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경유자동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 개정에 따라 소형 경유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을 개정	대기
'24. 10. 14.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0년까지 3,750만톤) 달성과 파리협정 제6조 지원조건 및 추진·관리, 산업심의·검토 등을 위해 고시 제정	대기

2. 환경부 입법(행정) 예고(10건)

예고기간	법령명 (행정규칙명)	주요 내용	비고
'24. 11. 13. ~ 12. 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기술인이 자가측정(대행)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 관리 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규정하며, 부속유기질비료제조시설 악취저감계획을 관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고(허가) 기한을 연장하고, 가스열펌프(GHP) 저감시설 인증이 지연 등인 경우 저감시설 설치(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기관은 적정 개선기간을 부여하여 수리하고, '22년말 당시 기설치·설치 중인 GHP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제한 규정 적용을 예외로 하며, 내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에 대한 부상지붕시설 보완조치 등 관리기준이 신설('19.7)됨에 따라 조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점검시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법을 보완	대기
'24. 11. 4. ~ 12. 1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발적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의 세부 기준, 배출권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의 세부 사유, 배출권거래증개회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절차, 과태료 부과와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고, 감축노력 없는 배출량 감소로 인해 기업의 횡재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권 할당의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대기
'24. 11. 12. ~ 11. 22.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의 운영 체계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	폐기물
'24. 11. 12. ~ 11. 22.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의 설치 및 운영, 생산실적 거래신고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	폐기물
'24. 11. 8. ~ 11. 28.	(생태통로 설치 대상지역 고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인·허가 등을 할 때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으로 고시함	자연
'24. 11. 8. ~ 11. 28.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교육선박 운행을 허용함	수질

'24. 11. 7. ~ 11. 27.	(화학물질 배출 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특정 연도에 화학물질 배출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사업장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제출시기를 명확히 분산하여 규정하고, 배출저감목표를 저감방안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취급량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예상 배출량을 명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배출저감 추진내역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	화학
'24. 11. 6. ~ 11. 26.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재활용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 비율에 관하여, 2024년 사용량은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15% 비율로 설정	폐기물
'24. 10. 30. ~ 11. 19.	(1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을 신설하고, 자원이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구를 명확화함	폐기물
'24. 10. 29. ~ 11.18.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폐전기전자제품’ 등을 수출입규제폐기물 목록에 추가하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목록에서 ‘폐전기·전자제품의 스크랩 및 부품’을 삭제하며, OECD 녹색폐기물 중에서 고시에 누락된 ‘금속 또는 합금으로만 구성된 전기조립품’, ‘비금속 및 귀금속 회수에 적합한 전자폐기물 및 재생된 전자 구성품’ 등 6종을 추가하고, OECD 황색폐기물에서 제외된 ‘어디에도 특정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시멘트 폐기물’을 삭제하는 등 관련 목록을 바젤협약에 맞게 현행화	폐기물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16건)

발의일자 (발의자)	법령명	주 요 내 용	진 행
'24. 11. 14. (김형동의원 등 10명)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양도인의 처분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	위원회 회부 (11.15)
'24. 11. 14. (김주영의원 등 11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정을 지원	위원회 회부 (11.15)

'24. 11. 12. (이용우의원 등 11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을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신고 한자의 하위사용자는 현행법에 따라 (변경)등록·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로 하여금 영업비밀 여부도 양수하는 자에게 작성 제공	위원회 회부 (11.13)
'24. 11. 12. (조지연의원 등 53명)	대기환경보전법	먼지의 정의에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응축성 먼지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절차를 마련	위원회 회부 (11.13)
'24. 11. 8. (박해철의원 등 22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품·포장재의 제조자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규정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가 재생원료를 목표에 맞게 사용 하는지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	위원회 회부 (11.11)
'24. 11. 8. (박해철의원 등 22명)	물환경보전법	유류·유독물·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보관 중인 자가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를 신설	위원회 회부 (11.11)
'24. 11. 8. (박해철의원 등 21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순환원료의 사용확대를 의무화하고, 환경부로 하여금 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권한을 부여	위원회 회부 (11.11)
'24. 11. 7. (임이자의원 등 11명)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50배 가량 상향 하였으나, 구체적인 위반행위 정도 및 타당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위반행위의 자진신고, 조사의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금액을 감경	위원회 회부 (11. 8)
'24. 11. 6. (임이자의원 등 10명)	대기환경보전법	수송부문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보조나 용자를 지원	위원회 회부 (11. 7)
'24. 11. 1. (이용우의원 등 11명)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제3기 계획기간 동안의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을 90%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50% 이내로 축소	위원회 회부 (11. 4)
'24. 10. 31.	온실가스 배출권의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위원회

(이용우의원 등 10명)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 대비 100분의 15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해당 배출권의 잔여량을 취소	회부 (11. 1)
'24. 10. 23. (김소희의원 등 14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회용품의 사용금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유상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1회용품의 사용 감량을 유도	위원회 회부 (10.24)
'24. 10. 23. (박홍배의원 등 16명)	토양환경보전법	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기존 과태료처분에서 벌금처분으로 벌칙을 적용하여 오염토양부지의 정밀조사 명령을 즉시 이행하도록 개선	위원회 회부 (10.24)
'24. 10. 17. (김소희의원 등 11명)	정부조직법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	행정안전 위원회 회부 (10.18)
'24. 10. 17. (김태선의원 등 14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의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여, 의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	위원회 회부 (10.18)
'24. 10. 17. (김태선의원 등 14명)	폐기물관리법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를 포기하여 폐기하기로 결정된 제품을 사업장 재고폐기물로 정의하고, 이러한 사업장 재고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신고	위원회 회부 (10.18)

II. 환경부 최근 정책 추진 동향

1. 2024년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2차) 주요 내용

1) 일정 및 참석위원

- 일시(장소) : 2024. 10. 24.(목) 10시 ~ 20시 20분(국회)
- 참석위원 : 안호영 위원장 등 16명 전원 참석

2) 여당 주요 질의 내용

- 일회용품 보증금제 자율시행 및 무상제공 금지 적극 시행
- 지하철 미세먼지 노후 환기설비 계량을 위해 재정 집중 투입
- 석포제련소 환경 기준 초과시 사용중지, 철거, 폐쇄도 필요
- 일회용품 회수보다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방향 검토
- 2차전지 리튬 폐수 적정 처리 방안 선제적 연구 추진
-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초과 제품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 노후화된 상·하수도관 정비사업 조속 추진, 맨홀 추락 방지지설 의무화, 응축성 미세먼지 측정 방법 개선, 가축분뇨 퇴액비 암모니아 배출기준 재검토 등

3) 야당 주요 질의 내용

- 용산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이 대통령 배우자를 위해 급조된 것 아닌지 질의
- 세종보와 공주보 가동 운영에 환경부 역할 필요
- 국회와 여론 조작하려는 환경부 일회용컵 내부 문건 사과 요구
- 댐건설 후보지가 폐쇄적이고 불투명하게 선정, 선정 과정 등 조사
- 기후위기 대응 예산 확대 방안 강구
- PVC는 대체 포장재가 가능하여, 전면 금지 방안 강구
- 정유화학업체 화학물질 특별점검계획 수립 및 사고대비 시스템 마련
-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계, 시민단체 등 참여 강구
- 2035 NDC 목표설정, 제4차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시 기후 약자와 재생에너지 전환 적극 추진
- 기후변화 완화 전략과 지속 가능 수질 정책의 통합 관리
- 기후 헌법 소원 후속 포럼에 미래세대 참여
- 폐기물부담금 과소 부과 및 과다 체납 업체 문제
- 화물차 요소수 제거 장치 운행 차량 관리 및 판매·유통자 처벌
- 가스 열히터 냉방 기계들 사후관리 대책 수립
-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구체적 로드맵 수립
-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에서 민간 소각장 위탁보다 공공 책임 강화
- 민간소각장 공공 통제 방안 법적 근거 마련,
- 석포제련소 환경과 노동자 안전문제, 건강권 문제 해결 필요
-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 등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마련
- 골프장 잔류 농약 기준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점검계획 수립
- 대기 자가측정 허위 조사 제도 개선
-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한 한국형 청소차 보급 확대, 환경책임보험 환경부 관장,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후속조치 적극 추진, 새옷 의류 제고 소각 문제 등

4) 환경부 주요 답변 내용

- 신규댐 14개 중 4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얻었고 강제로 추진하지 않음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해 환경부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추진
- 환경생태교육관 설립 절차는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진행
- 혼란과 우려를 준 환경부 일회용컵 내부 문건에 대해 사과
-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
- 정유화학업체의 화학물질 특별점검계획 수립 추진
- 석포제련소 환경 기준 초과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치
- 폐기물부담금 축소 신고나 누락이 없도록 시스템 구축
- 시멘트에 폐기물 투입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스템 등 제도 개선 강구
- 골프장 실효성 있는 점검계획 수립하여 의원실 보고
- 가축분뇨 제조시설 암모니아 기준 기간 유예 검토 등

2.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점검결과 관련 주요 내용

1)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점검 추진 경위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을 점검하고 부문별 정책을 제언
- 2050 탄소중립녹색위원회에서 감축목표 달성을 심의·의결('24.10.30)

2) 온실가스 감축목표 점검 주요 결과

- '23년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24.2백만톤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
 - '22년 대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1.1% 증가
 -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
 - '23년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톤으로 매년 증가
 - 우리나라는 지난'18년 이후 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감소
 - 경제성장이라는 배출량 증가요인에도 실제 배출량이 감소
 - 미국 4.1%·영국 5.4%·EU 9% 감소, 중국 4.7%·인도 7% 증가

- 국가 전체 및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단을 구성·운영
 - 에너지 전환·건물·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
 - '23년 목표대비 에너지 전환(10.2%↓), 산업(6.8%↓), 건물(7.1%↓) 당초 목표 초과 달성
 - 전기차 보급 감소세, 가축 사육두수 감소효과 미미,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으로 일부 목표에 미달
- 친환경 기술의 혁신·적용과 함께 관련 정책을 개선할 것 등을 제언
 -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연료의 친환경 전환, 생산 공정의 개선,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핵심 기술개발로 산업 부문 저탄소구조개선을 위한 기술혁신 노력 필요
 - 무탄소 발전 확대, 송전망 적기 구축,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과 무공해차 보급 확산 등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주문
- 2024. 8.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음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면밀한 협조 당부
 - 내년까지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 수립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 국제적 책임 등을 감안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절한 감축 기여 수준 설정 필요
- 파리협정에 따라 격년으로 제출하는 당사국의 기후위기 대응 보고서(격년투명성 보고서)를 국제연합(UN)에 제출 ('24년 말)
 - 2025년까지 '2035 NDC'를 수립하여 UN에 제출 예정

III. 환경부 인사 동향

발령일자	대상자	前 근무지	現 근무지
'24. 11. 29.	고위공무원 김지연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24. 11. 25.	고위공무원 유승광	자원순환국장	대변인
	고위공무원 김정환	대변인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고위공무원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고위공무원 김고응	파견근무(국방대학교)	자원순환국장
	고위공무원 이영석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지원 근무
	환경연구관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김혜련	-	별정직고위공무원 장관정책보좌관
'24. 11. 4.	고위공무원 주대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장 파견	환경부 파견 해제
	고위공무원 김종율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장 파견
'24. 11. 1.	고위공무원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24. 10. 28.	고위공무원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휴직 (UNDP 아시아태평양 사무소)

관련 구성원

오정민

변호사

T 02.3404.6529

E jeongmin.oh@bkl.co.kr

방종식

외국변호사(New York)

T 02.3404.7588

E jongsik.bang@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